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과 운용 실적

김 용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도입 문제 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실시에 따라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4년부터이다. 특히, 시멘트·밀가루·설탕 제조업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한 소위 '삼분사건(三分事件)'을 계기로 독과점의 폐해 방지를 기업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1966년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업계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969년에 다시 독점규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경제개발이 우선이며, 독점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물가 안정을 위하여 1975년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은 최고가격 지정, 긴급 수급 조정 등의 물가안정시책과 함께 담합, 거래 거절, 부당한 차별금지 등 일부 공정거래 제도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물가안정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공정거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목표와 실천 수단이 서로 다른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라는 이질적인 두 개념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성격이 모호한 점도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80년의 일이다. 이는 60~70년대에 걸친 정부 주도 성장정책의 추진 결과 발생한 시장 기능의 왜곡,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 등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질서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하겠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경제활동의 준칙(rule of game)을 정한 경제헌법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법·제도의 변천

가. 공정거래법의 변천

(1) 1980년 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원인금지주의(原因禁止主義)와 폐해규제주의(弊害規制主義)로 대별된다. 전자는 독점 또는 독점화 자체를 부인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제법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절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행위 규제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 및 변경,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

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② 기업결합의 규제 : 기업 합병,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의 양수 등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③ 공동 행위의 규제 : 가격·수량·설비의 제한이나 거래 지역 분할 등에 관한 담합행위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되, 불황 극복이나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 그 활동이 경쟁 제한적일 경우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부과

⑤ 경쟁제한 법령·처분 등의 사전 협의 : 관계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한·개정하는 경우나 행정 명령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

⑥ 불공정 국제계약의 시정 :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과 기타 수입대리점계약 등 국제계약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경쟁제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변경

⑦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거래 거절, 가격 차별, 부당경품 제공, 부당 할인 특매 등

⑧ 공정거래기구 : 이 법의 운영기구로 공정 거래위원회를 두고 위반 사건의 조사 및 사전 심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심사관제 설치

(2) 제1차 개정의 주요 내용

1986년에 첫 번째 법개정이 이루어져 87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1차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첫째,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와 기존회사의 지주회사 전환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직접상호 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집단들이 직접 상호출자보다는 행열형, 환상형 등 복잡한 형태의 출자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직접 상호출자 규제만으로는 간접 상호출자에 의한 불합리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존의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개별기업의 주식 취득 신고 기준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섯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조항을 보완하여 기존에는 개별회사별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던 것을 기업집단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규제하도록 하여 계열회사등 다른 사업자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공동행위의 등록제를 인가제로 개선함으로써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였다.

한편, 허용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에는 불황 극복 또는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동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조정, 거래 조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

1990년의 2차 개정은 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거래 기능 강화와 공정거래 운영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공정거래기구의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간 상호 출자를 추가로 금지하고 상호 출자 예외 허용 항목을 축소시켰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의 상호 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고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한하여 규제할 수 있었으나, 법에 포괄적으로 열거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해당되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표시 광고 규제기준에 '소비자만 및 오인 가능성'을 추가·보완하였다.

셋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벌칙을 크게 강화시켰고, 시정조치 수단으로 시정 광고,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을 명시하였다.

공정거래기구의 개편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을 위한 법운영사항의 심의 의결기관이었으나 경제기획 원장관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제도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공정거래 제도의 전담기구가 된 것이다.

(4) 제3차 개정의 주요 내용

1992년의 3차 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도입

된 것이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 여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여신 이용을 제약하고 선단식 그룹경영방식의 고착과 경제력집중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을 200% 이내로 제한하되 3년의 경과기간을 인정하였다.

둘째,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등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 행위의 효과적인 억제 및 시정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제4차 개정의 주요 내용

1994년의 4차 법개정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보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첫째,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되 소유분산을 유도 하기 위하여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대하여는 출자제한대상에서 배제하는 유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SOC민자유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에 대하여는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95년 4월의 시행령 개정시에는 업종 전문화 관련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우리 기업의 기술도입을 보다 원활히하고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계약

사전신고 의무제를 자율적인 심사요청 제도로 전환하였다.

넷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불공정 국제계약에 대하여 과징금(매출액의 2~3%)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나. 하도급법의 제정 및 개정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받지 못한다든가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여도 거래 단절의 위험 등 거래상의 불리한 지위 때문에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달리 자신의 권익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교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를 1982년 12월 경제기획원고시 제59호

로 고시하여 1983년 4월부터 시행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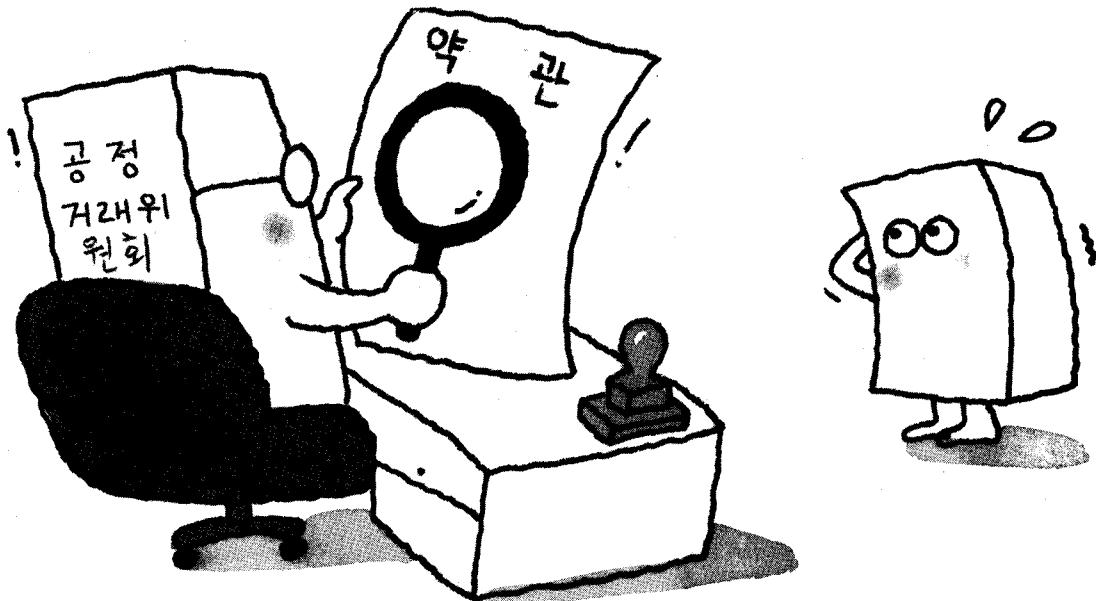
그러나, 해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립법률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은 1984년에 제정된 이후 1990년, 1992년, 1995년에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행법상 법적용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단, 업종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20억원~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 종업원수가 20인~30인 미만인 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다. 약관법의 제정 및 개정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하는데, 경제력의 차이, 시장

구 분	내 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강요하는 행위
선급금의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부당한 수령 거부, 반품, 감액 금지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반품·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 ·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음 할인료(연12.5%) 부담 ·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연 이자(연25%)를 지급



의 독과점구조로' 사업자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고객간에 대등한 거래가 어려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약관규제의 경향을 보면 행정적 규제 또는 사법적 규제에 의해 오다가 1970년대에 와서 입법적으로 약관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 입법으로는 독일의 보통거래약관법(1976), 영국의 불공정계약조항규제법(1977), 스웨덴의 부당계약약관규제법(1971), 이스라엘의 표준약관법(1964) 등이 있다. 특별법을 입법하지 않고 민법 또는 상법 등을 개정하여 약관을 규제하는 나라도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대량 생산 및 대량 거래가 발달하였고,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의 발달과 판매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약관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약관사용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제정 논의가 1980년대초부터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87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약 5년 7개월간 경제기획원에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법령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의 한계로 불공정한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약관심사업무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과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1992년 12월 8일 공포되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된 1993년 2월 이후 약관심사의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오고 있다.

라. 공정거래기구의 변천

정부 내에 공정거래기구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76년 2월의 일로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가 설치되었다. 1979년 2월에는 물가정책국이 물가관리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정거래정책관이 신설되고 그 밑에 3개과가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4월이다. 이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정 처분에 앞서 심의 의결하는 필수적 심의기관으로서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겸임하였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공정거래실로서 경제기획원의 내부조직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실장 밑에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로 구성되었다.

1981년 11월부터는 경제기획원 차관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것은 1990년 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0년 개정법에 의해 종래 경제기획원 장관이 수행하던 공정거래법 운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공정거래실은 위원회의 사무처로 흡수·통합되었으며, 지방사무기구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도 2명이 추가되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도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이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기타 위원을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에는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경제기획원 산하기구에서 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사무처 조직도 5국, 1심의관, 24과, 4개 지방사무소 34명으

로 구성되어 종전보다 2국, 6개과 65명이 증원되었다.

그 후 다시 1년여만인 96년 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각 부문에 경쟁정책을 확산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차관급 기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조직도 보강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5년 동안의 운영 실적

지난 15년 동안의 공정거래 제도 운영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면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촉진을 통하여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인·공무원·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첫째, 공정거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 이념의 확산, 독과점 품목의 수입자유화와 정부 규제의 완화 등으로 시장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와 채무보증 제한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셋째, 담합 행위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시정활동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고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증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시장구조의 개선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를 보면 1970년대에는 독과점시장 구조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상위 3개사의 출하액 점유 비중이 50% 미만인 경쟁형 시장이 현저히

사건 유형별 처리 실적 (81~95)

(경고 이상, 건수)

사건 유형	81~86	87~91	92	93	94	95	81~9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5	6	6	2	1	3	23
출자·채무보증총액 제한 위반	-	64	37	5	12	3	121
기업결합 신고 위반	189	138	19	24	13	23	406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96	199	54	66	120	283	818
불공정거래 행위	671	1,348	292	397	430	356	3,494
불공정 하도급	383	725	149	223	220	383	2,083
불공정 약관	-	35	8	34	83	51	211
불공정 국제계약	1,210	874	57	65	55	40	2,301
계	2,554	3,389	622	816	934	1,142	9,457

늘어나고 있다(81년 26. 1% → 87년 35. 2% → 92년 37. 4%).

이러한 시장구조 개선을 공정거래법 운영의 성과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대기업 편중여신 지양, 자율화·개방화의 추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시행은 카르텔 억제 등 그 자체의 기능 외에 정부 및 민간의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하여 경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러한 효과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라는 산업정책 전반의 기초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 경제력집중의 억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경제력 집중현상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87년부터 출자규제 제도의 시행으로 타회사 출자 비율이 낮아지고 본인 친인척 등의 내부지분율도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가 20. 8개에 이르는 등 과다한 기업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연 도	87.4	92.4	93.4	94.4	95.4
평균계열회사수 (개)	16.8	19.2	20.1	20.5	20.8

다. 거래 형태의 공정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이 미약하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으로 공정거래규범 준수에 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재발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근년에는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연 도	81~86	87~91	92	93	94	95
고발건수	6	27	8	8	13	33
과징금 부과액 (백만원)	-	2,367	3,376	1,070	2,575	4,919

라. 경쟁제한적인 각종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 억제,

연 도	87.4	92.4	93.4	94.4	95.4
출자비율 (%)	44.8	28.8	28.0	26.8	26.3
내부지분율 (%)	56.2	46.1	43.4	42.7	43.3

카르텔 및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작업에도 주력하였다.

198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10개 산업의 규제완화 촉진 시책이 시행되었으며, 1995년에는 30개 경쟁제한 법령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지금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소멸해가고 상품·서비스·자본·기술 등의 국제적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규모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기업활동의 해외 부문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 규제의 영역과 유효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제통상협상의 대상도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넘어서 국내의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교역 장애 요소로써 주요협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OECD, UNCTAD, APEC 등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WTO 차원에서 '경쟁라운드추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당국은 우리 경제 전반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대기업집단정책에 있어서는 과도한 소유집중 및 금융편중 구조 하에서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경영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소유분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독과점 남용 행위 규제와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 발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능은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공정한 경쟁규칙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당국은 경쟁정책 중심의 경제 운영이라는 비전 하에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관행의 개선작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규제 보호 위주의 산업정책을 경쟁정책으로 수렴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 질서의 확립에 있어서는 경쟁제한 정도가 심하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동행위(카르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시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법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라운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공정거래 제도 자체를 선진화하고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을 반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EU 등과의 쌍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